

# 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구이용 협약서

(주)대영화학과 대구대학교 중앙기기센터는 연구 및 장비 상호지원의 일환으로 인력, 장비 및 시설의 공동활용과 효율적인 인재양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교류협정을 체결한다.

## 1. 협약내용

- 가. (주)대영화학 및 대구대학교 교수<sup>가</sup> 상대기관의 장비사용을 의뢰하는 경우 이들의 사용에 적극 협력한다.
  - 나.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공동 활용하거나 기자재를 상호위탁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한다.
2. 본 협약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기간은 2년간으로 한다.
  3.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,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2년 5월 17일

대구대학교 중앙기기센터  
소장 김재경



(주)대영화학  
대표 홍성길

